

##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고문

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발급통지를 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공고하오니 아래에 기재된 기한까지 발급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발급신청 대상자 인적사항 -

성명	생년월일	주소	발급신청기한
최*재	06.12.06	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21길*****	2024.1.1.~2024.12.31
손*석	07.11.16	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23가길*****	2024.12.1.~2025.11.30

※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」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(문의:☎330-8580, 담당자:정금선)

【 발급 안내 】

가.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나.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.

-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이 부착된 증명서야 함)
-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
-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, 배우자,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
- 준비하여야 할 사진 :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1장(3.5cm x 4.5cm)
- 발급된 주민등록증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수령 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 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.

2024년 12월 19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제2동장 인

